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48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허성무·김문수·조계원

권향엽 • 주철현 • 정진욱

박 정・김남근・이기헌

허 영·박희승·박지원

유건영 • 유종오 • 김 유

이광희 • 이병진 • 김동아

박선원 · 오세희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제22조의6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6(가족등 임종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등 임종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가족등 임종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등 임종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등 임종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 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등 임종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6(가족등 임종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			
	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			
	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			
	한 휴가(이하 "가족등 임종휴			
	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u>한다.</u>			
	② 사업주는 가족등 임종휴가			
	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방			
	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37조(벌칙) ① (생 략)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2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하			

- 9. (생략)
- ③ 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략)

<신 설>

- 9. (생략)
- ④・⑤ (생 략)

여 가족등	임종후	후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현	<u></u> 처우
를 한 경우			

- 9.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등 임종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9.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